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2025-5호)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1차 개정 상법")에 이어, 오늘 (2025. 8. 25.) 재계의 우려가 컸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704)은 1차 개정 상법 당시 논의되었으나 추후로 미뤄진 ▲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 감사위원 분리선출 수 증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재계가 요구해 온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관련 의안들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상법 제542조의7 제3항)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이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투표제와는 달리 소수주주 측의 후보도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¹⁾. 따라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1)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 10,000주(갑: 6,000주/을: 4,000주)의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갑측 후보 A, B, 을측 후보 C 중 2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함(사례 참고: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22. p.966)

① 단순투표제의 경우: A, B, C를 순차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에 따르면, 갑측 후보 A, B가 이사로 선임됨. 즉, 언제나 과반수 주식 보유 주자인 갑이 이사를 결정하게 됨.

② 집중투표제 도입 시: 주주 갑의 의결권은 12,000개, 주주 을의 의결권은 8,000개가 됨. 주주 을은 C에게 의결권 8,000개 모두 행사하고 갑은 의결권 12,000개 중 A에게 7,000개, B에게 5,000개 행사할 경우, 갑측 후보 A, 을측 후보 C가 이사로 선임됨.

현행 상법의 집중투표제 규정

현행 상법은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단,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1%이상의 주식 보유 주주)에게 집중투표제 실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그러나,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제542조의7 제3항)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투표제의 실제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최근 5년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은 약 10%에 그쳤고, 도입한 회사 중에서도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²⁾).

2차 상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

현행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³⁾,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7 제3항).

다만 이 개정안도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한다는 상법 제542조의7 제2항⁴⁾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일 6주 전⁵⁾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해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선임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2025년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연대가 여러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의 주주제안을 행사했습니다⁶⁾. 이번 2차 개정안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반영하라는 주주제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집중투표제 청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개정만으로도 집중투표제의 실질적인 도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 분리선임 수 2인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제도 현황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된 후,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논의, 의결하여 위원회를 정하게 됩니다(상법 제393조의2).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야 하므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1차 개정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시에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 3%, 일반주주는 개별 3%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2026년 7월 23일 시행).

2) 2025. 7. 30. 집중투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ESG연구소

3) 현행 상법 시행령 제33조는 집중투표 특례 대상 회사인 대규모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상법 제542조의7 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법 제542조의7 ㉑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6) 2025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 서스틴베스트, 2025.4.10.(<https://www.sustainvest.com/news/release/3158>)

다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명을 제외하고는 이사 선임을 먼저 한 후 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므로 최대주주 합산 3%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 중 2명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 안건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2명 보다 많은 수를 분리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주식회사 감사 등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사항(2026. 7. 23. 시행 예정 1차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반영⁷⁾)

1차 개정 상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시행된 이후 주식회사 감사 등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치 의무 / 구성 (근거 조항)	선임	해임
비상장회사	감사(상법 제409조, 제415조의2)	개별 3% 제한	제한 없음
	또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이사회 선임)	(이사회 해임)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감사(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최대주주 합산 ⁸⁾ 3% 제한 그 외 주주 개별 3% 제한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이사회 선임)	(이사회 해임)
자산 1천억 원 이상 ~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상근감사(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최대주주 합산 3% 제한 그 외 주주 개별 3% 제한	
	또는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 중 2인 이상 분리 선임(2차 개정안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 중 2인 이상 분리 선임(2차 개정안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2. 시사점

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증원 의 조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2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분리선임 감사위원이 2인으로 증원되면서 복수 이사 선임 시 적용되는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가 이사

7) 현재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행사 제한. 2026. 7. 23. 부터 감사위원인 이사 전원에 대해 합산 3% 의결권 제한 적용

8)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3%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합산

회 및 감사위원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소수주주측 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권, 업무 조사권 등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 기업의 대응 전략

그러나, 소수주주측 감사위원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주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소수주주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 창출 전략을 설명하는 등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정한 감사위원회 규정 내지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개정 상법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 -----2명-----3명----- -----
③~⑧ (생략)	③~⑧ (현행과 같음)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③ (생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12제5항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건 변호사

02-528-5308

gkim@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위춘재 변호사

02-528-5973

cjw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